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미경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13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4월 19일

발 의 자 : 김미경, 우미경, 유찬중, 남재경,
박준희, 조규영 의원(6명)

찬 성 자 : 김경자(양천), 박양숙, 김혜련,
장우윤, 김용석(도봉), 조상호,
오봉수, 이윤희, 권미경, 김희걸,
서운기, 박기열, 신원철, 김문수
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최근 노후주택 밀집지역 및 구릉지, 하천변 등 소규모 굴착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비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시·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를 포함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시·구 건축위원회에서 ‘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·옹벽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 중 석축·옹벽 높이와 굴착깊이 합이 10m이상인 공사의 경우’에 대한 굴토심의를 실시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한다.

사. 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, 지하수위,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및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·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·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한다.

라. 제1항제1호 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, 지하수위,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및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·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·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굴토심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, 건축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, 심의건수 증가에 따른 심의비용 증가 등의 비용발생은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김 미 경